

의안번호	2216155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1.
추 계 번호	25A7212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 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(형식승인의 면제)	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3조제1항 (검정)	그 밖에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4조 (재검정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정을 받는 것으로 재검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(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),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(안 제24조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30조제5항 신설 (정기검사)	시·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64조 (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)	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제1항 (형식승인의 면제)	·미대상 -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
2	안 제23조제1항 (검정)	
3	안 제24조 (재검정)	
4	안 제30조제5항 신설 (정기검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64조 (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)	·미대상 -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(안 제30조제5항 신설)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
 - 안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하여 온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업비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과 직접 정기검사를 수행한 데 따른 지자체 직접수행 경비 지출 감소가 예상됨
 - 한편, 안 제15조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형식승인·검정·재검정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형식승인·검정·재검정 면제가 가능하나,

개정안은 기술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제범위를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 확대하려는 취지

- 이 경우 형식승인·검정·재검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항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「국회법」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음
- 또한 안 제64조제2항에 따라 계량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개정안은 계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2026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에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목적으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정안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「국회법」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기검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와 지자체가 직접 정기검사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공무원 출장여비, 검사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의 차이를 토대로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, 현재로서는 ①정기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 중 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지자체의 수와 ②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에 따른 비용(민간위탁사업비) - 현행법에 따른 비용(직접수행경비)
 - 개정안에 따른 비용: 정기검사 업무를 직접수행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
 - 현행법에 따른 비용: 정기검사 업무를 직접수행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기존에 정기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
- 이에 개정안과 같이 정기검사 업무를 민간위탁 업무로 전환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